

의안번호	2124114
의 퇴 인	김진표 의원
회 답 일	2023.09.21.
추 계 번호	23C3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3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제1항)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9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6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로 한다. (제2항)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0분의 45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0분의 225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0분의 7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0분의 25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제3항)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6조 (비용의 보조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대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1%p 변경하고,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사유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등을 추가하는 내용임

[표 1] 현행 및 개정안의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에 대한 재원 배분 비율 비교

	현 행	개 정 안
보통교부금	97%	96%
특별교부금	3%	4%

주: 현행 및 개정안의 비율은 각 교부금이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2] 현행 및 개정안의 특별교부금 재원 배분 비율 비교

구분	교부목적	현 행	개 정 안
제1호	국가시책	60%	45%
제2호	지역현안	30%	22.5%
제3호	재난안전관리	10%	7.5%
제4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	25% (신 설)

주: 현행 및 개정안의 비율은 각 교부목적별로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규모의 변화는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기존 교부금 재원 외에 국가 예산을 통한 별도의 증액교부¹⁾가 불가피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함

- 현재 개정안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의 유사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30억원이 상정²⁾되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업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
- 한편 특별교부금의 모태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규모에 연동되고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규정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방과후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 법 제3조제4항에 근거하여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액교부가 실시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세입예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으로 정해져 있으나, 제3조제4항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증액교부할 수 있으므로 교부액이 증가할 수 있음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2)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2023.2.)의 교원연수방안과 관련하여 T.O.U.C.H교사단 구성과 연수 등을 계획·실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안에는 ‘26년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교과 교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30억원을 상정하였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